

시간제등록제 운영 규정

□ 제정 : 2012. 6. 29.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3조의 5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학칙에 의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선발) ① 시간제 학생의 선발은 출신고등학교 내신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에 의해 선발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통합반과 별도반으로 선발 한다. <개정 2019.06.18.>

제3조(신청)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6.18.>

제4조(교육과정) ① 통합반 시간제 등록학생은 재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별도반 시간제 등록학생의 교육과정은 재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개설 할 수 있다.

제5조(학위수여) ① 시간제 등록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 본교에서 50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 등록 학생은 소속 학과의 교양과목을 필히 이수하고,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45학점(3년제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충족된 자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3년제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본교 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06.18.>

⑤ 시간제 등록 학생의 학위수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사운영) 시간제등록제의 학사운영은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금)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활동 금지) 시간제등록제로 등록된 자는 본교의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활동을 할 수

5-0-4 시간제등록제 운영규정

없다.

제10조(징계) 본교의 학칙 및 기타 내규를 위반하는 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